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수곤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21년 12월 일
제 출 자 : 전수곤, 김영래, 배재만
구교강, 김성우, 도희재, 황숙희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행정안전부 제17893호, 2022.1.13. 시행) 전부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용 조문 변경 개정(안 제1조, 안 제5조, 안 제11조 등)

- 목적: 지방자치법 제41조를 제49조로, 시행령 제52조를 제53조로 변경
- 대상기관: 법 제121조를 제135조로, 법 제146조를 163조로 변경
- 증인등의 보호: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을 제49조제4항으로 변경

3. 조 례 안 : 붙 임

4. 입법예고기간 : 2021. 12. 17. ~ 12. 21.

5. 관련법령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를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121조”를 “법 제135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146조”를 “법 제163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본문 중 “법 제104조제2항”을 “법 제117조제2항”으로 한다.

2.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군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 행정기관

제6조제1항제1호 중 “법 제9조”를 “법 제13조”로 한다.

제11조제3항 본문 중 “법 제41조제4항”을 “법 제49조제4항”으로 한다.

제19조 중 “법 제86조부터 제88조”를 “법 제98조부터 제100조”로 한다.

별표 2의 선 서(일반인) 본인은 성주군의회 ○○○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주 소 : 생 년 월 일 : 성 명 : (인) 중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를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성주군 행정사무에 대하여 성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5조(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대상기관)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 및 제120조에 따른 군 소속 행정기관	2.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군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 행정기관
3. 법 제121조에 따라 설치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3. 법 제135조----------
4. 군이 설치한 법 제146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4. -------- 법 제163조----------
5. 법 제10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군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는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5. 법 제117조제2항 ----------.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대상사무) ① ----------.
1. 법 제9조에 따른 군의 사무범위에 속하는 사무	1. 법 제13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1조(증인 등의 보호 등) ①·② (생략)	제11조(증인 등의 보호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성주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증인 등이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법 제49조제4항----------.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의원이 제13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4조에 따른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제86조부터 제88조까지 및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19조(징계) ---------- 법 제98조부터 제100조----------.
<별표2>	<별표2>

선 서(일반인)	선 서(일반인)
본인은 성주군의회 ○○○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주 소 : 생 년 월 일 : 성 명 : (인)	본인은 성주군의회 ○○○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와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주 소 : 생 년 월 일 : 성 명 : (인)

붙임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도의회는 그 감사 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34조를 따른다.

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과 제5항의 선서·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